#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69

발의연월일: 2020. 8. 24.

발 의 자:김민기·이해식·백혜련

고영인 · 권칠승 · 조오섭

김병욱 • 이재정 • 서동용

강득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규칙에 표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상당수의 지방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 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제64조의3으로 하고,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1. 제48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 2.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 3. 제55조에 따른 의장불신임 의결
- 4. 제80조에 따른 자격상실의결
- 5. 제86조에 따른 징계 의결
- 6. 제107조 또는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64조의2(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48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u>선거</u>
	2.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
	<u>출</u>
	3. 제55조에 따른 의장불신임
	<u>의결</u>
	4. 제80조에 따른 자격상실의결
	5. 제86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107조 또는 제108조에 따
	른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
	<u> </u>
<u>제64조의2(</u> 표결의 선포 등) (생	
략)	제64조의2와 같음)